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3. 15.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
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
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1년 3월 3일

○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은여울고등학교(2021. 3. 1. 개교)가 벽지학교 ‘라’ 등급에 지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특수지근무수당(도서벽지수당)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 표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

등급	시·군	위치	기관명
라	진천군	문백면 농다리로 536-45	은여울고등학교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은여울고등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해당 학교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2021년 3월에 개교한 은여울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수지급무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, 앞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부칙으로 적용시기를 소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고, 조례 개정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교 이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